

제227회 금천구의회 임시회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

「서울특별시 금천구 기부자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
운영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(행정문화국 마을자치과)

2021. 2. 19.



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

서울특별시 금천구 기부자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
운영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059호
- 나. 제출자 : 이 경 옥 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1. 2. 8.
- 라. 회부일자 : 2021. 2. 8.

2. 제안이유

기부금을 기탁한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목적, 정의, 적용범위(안 제1조 ~ 안 제3조)
- 나. 기부자 명부관리 및 기부자 예우(안 제5조 ~ 안 제6조)
- 다. 기부심사위원회 설치·구성 및 운영(안 제7조 ~ 안 제13조)
- 라. 의견청취, 수당(안 제14조 ~ 안 제15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

-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 제5조, 같은법 시행령 제12조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예산조치

다. 입법예고 : 2021. 2. 8. ~ 2. 15.

5. 검토의견

가. 제정이유

본 조례안은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이경옥 의원이 발의 하였음.

나. 주요내용

-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, 정의, 적용범위에 관한 것으로,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2항제1호의 내용을 반영한 조항임. 지방자치단체는 자발적 기탁품이라도 법령의 근거 없이는 이를 접수할 수 없는 바, 예외적으로 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’ 등은 접수가 가능하며, 본 조항은 이러한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음.

- 안 제4조 및 제5조는 구청장의 책무 및 기부자 명부관리로 구청장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기부자 명부를 관리하여야 함
- 안 제6조는 기부자예우에 관한 사항으로 기부자를 기릴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고,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, 구청장 표창장·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, 구가 발행하는 각종인쇄매체,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등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방법을 규정하였음
-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3항에 의거 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는 기부심사위원회 기능,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음
-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의견청취, 수당, 시행규칙 등을 규정하였음

다. 검토결과

본 제정조례안은 기부자 개인이나 단체를 예우함으로써 기부자의 자존감 부여, 기부문화 확산, 기부금품 관리의 투명성이 제고 될 것으로 기대되며,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기부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붙임 관계 법령 1부.

관계법령

□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

[시행 2017. 7. 26.] [법률 제14839호, 2017. 7. 26., 타법개정]

제5조(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·접수 제한 등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·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·출연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·출연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·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·출연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.

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

③ 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둔다.

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, 대법원규칙, 헌법재판소규칙,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, 대통령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
[시행 2021. 1. 1.] [대통령령 제31349호, 2020. 12. 31., 타법개정]

제12조(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·운영)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(이하 “시장·군수·구청장” 이라 한다) 소속으로 두는 기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1. 3. 29.>

② 위원장은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 라 한다)의 경우 시·도지사, 시·군·자치구의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시·도의 경우 행정부시장·행정부지사, 시·군·자치구의 경우 부시장·부군수·부구청장이 된다. <개정 2020. 7. 7.>

③ 위원은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해당 시·도 또는 시·군·자치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임명한다.

⑥ 시·도 및 시·군·자치구 기부심사위원회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